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1.4.6.)

조 례 안
검토보고서

의회운영위원회
[전문위원 진 학 성]

목 차

1 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1

의안번호 제2021 - 43호

『거창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1. 3. 30.

나. 발 의 자 : 권순모외 10인

다. 회부일자 : 2021. 3. 30.

2. 제안이유

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의회 의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
다.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 계획(안 제4조)

라.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선정 및 활동지원(안 제5조 및 제6조)

마. 협력 및 우수 체험수기·제안 선정 등(안 제7조 및 제8조)

바. 청소년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 및 보상(안 제9조)

사. 표창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청소년기본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　　의 : 기획예산담당관, 인구교육과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1. 3. 29. ~ 4. 5.

나) 예고결과 :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자 함이며,

○ 『청소년기본법 제5조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**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** "라고 규정되어 있어,

○ 청소년관련 지방정책을 수립하는 지방의회에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성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정책수립 과정과 정책참여도, 의견수렴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이해도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임.

○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관 련 법 령

□ 청소년기본법

□ **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**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·협의·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·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2.>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 12. 12.>

□ **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주민의 권리)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(이하 "지방선거"라 한다)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생략
2. 주민의 복지증진
  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 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  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   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 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  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  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  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  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  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